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자체평가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신학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자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자체평가”는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본 대학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 (자체평가기획위원회) ① 자체평가의 기획·조정을 위하여 자체평가기획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기획위원회는 기획위원회로 갈음한다.

③ 자체평가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체평가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연구위원회의 제안 사항
3.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 예산 확보와 평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체평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자체평가연구위원회) ① 자체평가의 활성화와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자체평가연구위원회(이하 “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연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지표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계획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4. 그 밖에 자체평가연구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자체평가실무위원회) 자체평가연구위원회와 행정부서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자료수집 등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자체평가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 (평가시기 및 절차) ① 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평가는 평가계획수립, 평가실시, 평가결과 공개의 절차로 진행된다.

제7조 (평가영역) 평가영역은 대학정보공시 내용을 포함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연구 영역
2. 조직·영역
3. 시설·영역
4. 기타 자체평가기획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제8조 (평가결과의 공시 및 활용) ① 자체평가의 결과는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결과는 장·단기 발전계획 및 전략 수립,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연구의 질 제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②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은 기획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폐한다.